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552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3. 2. 6.
4. 회부일자 : 2023. 2. 9.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「지방자치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시행)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
2.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('22.12.8.시행)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인용조문 현행화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[별첨6] 「지방교차차법」, 「도서관법」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 1)
3. 협의 : 감사관, 민주생활시민교육과 협의완료
4. 기타 :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(별첨 1)
 - 입법예고 결과: 미실시 [별첨 2]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
 - 교육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[별첨 3]
 - 성별영향평가: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[별첨 4]
 - 학생인권영향평가: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[별첨 5]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52호로 제출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「지방자치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

- 동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13일과 12월 8일 「지방자치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¹⁾ 같은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각각 개정된 조문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.

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

1) 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「도서관법」[시행 2022. 12. 8.] [법률 제18547호, 2021. 12. 7., 전부개정]

장 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비롯한 11개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의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바,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 동 조례들의 개정 사유가 된 「지방자치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의 개정은 지난 2021년 1월과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,

국회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전부 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 주민들이 공포된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행에 필요한 조례·규칙 등의 제·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법률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.

- 상기의 「지방자치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의 경우에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법률 적용에 필요한 법적·행정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안이한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을 실기(失期)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.
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의안심사지원팀장	이준석 2180-8263	입법조사관	정진국 2180-8265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